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57
----------	------

제출연월일: 2022. 7. 11.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민선8기 구정목표에 맞추어 역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 신설, 행정기구 명칭변경과 재배치 및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 하는 조직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서개편

1) 국 명칭변경(안 3조)

- 일자리경제국 → 미래전략국
- 주민자치국 → 행정지원국

2) 단 신설 : 정책사업단(안 제5조의2)

3) 과 명칭변경(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 일자리기업과 → 일자리정책과
- 경제진흥과 → 지역경제과
- 혁신교육과 → 교육지원과
- 행정지원과 → 총무과
- 주민소통과 → 자치행정과
- 여성가족과 → 가족복지과

나. 분장사무 조정

1) 미래전략국(안 제6조)

- 가) 일자리정책, 일자리지원, 사회적경제 등에 관한 사항
- 나) 지역경제, 전통시장, 농업, 축산업 등에 관한 사항
- 다) 문화예술, 문화관광, 문화재 관리, 한글도시 등에 관한 사항
- 라) 교육정책, 평생교육, 도서정책, 체육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행정지원국(안 제7조)

- 가) 총무, 인사단체, 정보관리 등에 관한 사항
- 나) 자치행정, 자치협력, 청렴감사 등에 관한 사항
- 다) 경리, 계약, 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
- 라) 세무, 취득세, 재산세, 과표 등에 관한 사항
- 마) 지방소득세, 체납정리, 세외수입관리, 통합기동징수 등에 관한 사항
- 바) 민원, 가족관계등록, 여권업무, 지적업무, 지적제조사업무, 부동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복지환경국(안 제8조)

- 가) 생활민원, 희망복지, 통합조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 나) 노인정책, 노인지원, 장애인복지, 생활보장 등에 관한 사항
- 다) 여성정책, 아동보호, 청소년, 보육, 드림스타트 등에 관한 사항
- 라) 환경관리, 환경지도, 위생행정, 위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 마) 환경미화, 자원순환,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 바) 공원관리, 녹지관리, 산림휴양, 정원정책 등에 관한 사항

4) 안전도시국(안 제9조)

- 가) 안전정책, 재난관리, 중대재해, 통신관제,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
- 나) 건설행정, 가로환경, 토목, 치수 등에 관한 사항
- 다)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도시재생시설 등에 관한 사항
- 라)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과징 등에 관한 사항
- 마) 광고물관리, 경관디자인, 건축허가, 공동주택 등에 관한 사항
- 바) 비기술부서의 공사업무(설계, 심사, 감독, 준공), 문화재·대형 체육시설물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지시사항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 가. 「지방자치법」 제125조
-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 다.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28507호, 2022. 7. 11.)
- 라.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생략
-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장 및 실장·과장의 직급 등)”을 “(국장 및 실장·과장·단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장·과장 등”을 “실장·과장·단장 등”으로, “실장·과장의”를 “실장·과장·단장의”로 한다.

제3조 중 “일자리경제국·주민자치국·복지환경국·안전도시국”을 “미래전략국·행정지원국·복지환경국·안전도시국”으로 한다.

제4조 중 “기획예산실”을 “기획예산실·정책사업단”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정책사업단) 정책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정책 및 시책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2. 공모사업 및 우수시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책자문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식·기술·서비스기반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5. 기업유치·지원, 상업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6. 혁신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7. 4차 산업혁명기반 기업관리에 관한 사항
8. 공약사항 중 주요 역점사업 등에 관한 사항
9.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0. 인구 및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제6조의 제목 “(일자리경제국에 두는 과)”를 “(미래전략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일자리경제국에 일자리기업과·경제진흥과·회계과·세무1과·세무2과”를 “미래전략국에 일자리정책과·지역경제과·문화관광과·교육지원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업지원, 사회적경제”를 “사회적경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제정책”을 “지역경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리, 계약, 재산관리”를 “문화예술, 관광, 문화재, 한글도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세무, 취득세, 재산세, 과표”를 “교육정책, 평생교육, 도서정책, 체육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주민자치국에 두는 과)”를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민자치국에 행정지원과·주민소통과·문화관광과·혁신교육과·민원지적과”를 “행정지원국에 총무과·자치행정과·회계과·세무1과·세무2과·민원지적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자치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사”를 “인사단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치사업, 구민협력”을 “자치협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예술, 문화관광, 문화재 관리, 한글도시”를 “경리, 계약, 재산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혁신교육, 평생교육, 도서정책, 체육지원 및 체육시설물 관리”를 “세무, 취득세, 재산세, 과표”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지방소득세, 체납정리, 세외수입관리, 통합기동징수 등에 관한 사항
- 6. 민원, 가족관계등록, 여권업무, 지적업무, 지적재조사업무, 부동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복지지원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환경위생과·환경미화과”를 “복지지원과·노인장애인과·가족복지과·환경위생과·환경미화과·공원녹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복지정책”을 “생활민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인복지”를 “노인지원, 장애인 복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여성, 아동”을 “여성정책, 아동보호”로, “외국인, 드림스타트”를 “드림스타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공중 위생, 식품위생, 녹색성장”을 “환경관리, 환경지도, 위생행정, 위생지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환경보전대책,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을 “환경미화, 자원순환, 폐기물관리”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공원관리, 녹지관리, 산림휴양, 정원정책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안전총괄과·건설과·도시과·교통과·건축과·공원 녹지과·시설지원과”를 “안전총괄과·건설과·도시과·교통과·건축과·시설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안전정책 총괄, 재난 관리, 통신관제,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을 “안전정책, 재난관리, 중대 재해, 통신관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치수등”을 “치수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및 도시 재개발, 도시재생”을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도시재생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경관디자인 및 광고물관리, 건축·주택행정, 건축허가

관련 복합민원처리”를 “광고물관리, 경관디자인, 건축허가, 공동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경제진흥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국장, 주민자치국장”을 “미래전략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주민자치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주민자치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도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항 중 “경제진흥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산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일자리경제국”을 “미래전략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주민자치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한다.

⑫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5호 중 “주민자치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⑬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7호 중 “주민자치국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

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자치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 ⑮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5호 중 “주민자치국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

- ⑯ 울산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주민자치국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

- ⑰ 울산광역시 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2항 중 “일자리기업과장, 행정지원과장”을 “일자리정책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장 및 실장·과장의 직급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의 실장·과장 등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과 실장·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생략)</p>	<p>제2조(국장 및 실장·과장·단장의 직급 등) ① ----- ----- 실장·과장·단장 등 ----- 실장·과장·단장의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일자리경제국·주민자치국·복지환경국·안전도시국을 둔다.</p>	<p>제3조(국의 설치) ----- ----- 미래전략국·행정지원국·복지환경국·안전도시국-----.</p>
<p>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보좌기관 설치) 부구청장 밑에 기획예산실을 둔다.</p>	<p>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보좌기관 설치) ----- 기획예산실·정책사업단-----.</p>
<p><신 설></p>	<p>제5조의2(정책사업단) 정책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요정책 및 시책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2. 공모사업 및 우수시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책자문단 운영 및 관리에

	<p style="text-align: center;"><u>관한 사항</u></p> <p>4. <u>지식·기술·서비스기반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u></p> <p>5. <u>기업유치·지원, 상업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u></p> <p>6. <u>혁신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u></p> <p>7. <u>4차 산업혁명기반 기업관리에 관한 사항</u></p> <p>8. <u>공약사항 중 주요 역점사업 등에 관한 사항</u></p> <p>9. <u>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u></p> <p>10. <u>인구 및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u></p>
<p>제6조(<u>일자리경제국에 두는 과</u>)</p> <p>① <u>일자리경제국에 일자리기업과·경제진흥과·회계과·세무1과·세무2과를 둔다.</u></p> <p>② <u>일자리경제국장</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u>일자리정책, 일자리지원, 기업지원, 사회적경제</u> 등에 관한 사항</p> <p>2. <u>경제정책, 전통시장, 농업, 축산업</u> 등에 관한 사항</p> <p>3. <u>경리, 계약, 재산관리</u> 등에 관한 사항</p>	<p>제6조(<u>미래전략국에 두는 과</u>) ①</p> <p><u>미래전략국에 일자리정책과·지역경제과·문화관광과·교육지원과</u>-----.</p> <p>② <u>미래전략국장</u>-----.</p> <p>1. ----- <u>사회적경제</u> -----</p> <p>2. <u>지역경제</u>-----</p> <p>3. <u>문화예술, 관광, 문화재, 한글도시</u> -----</p>

4. 세무, 취득세, 재산세, 과표
등에 관한 사항

5. 지방소득세, 체납정리, 세외
수입관리, 통합기동징수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주민자치국에 두는 과) ①
주민자치국에 행정지원과·주
민소통과·문화관광과·혁신교
육과·민원지적과를 둔다.

② 주민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 인사, 정보관리 등에 관
한 사항

2. 자치행정, 자치사업, 구민협
력, 청렴감사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문화관광, 문화재
관리, 한글도시 등에 관한 사
항

4. 혁신교육, 평생교육, 도서정
책, 체육지원 및 체육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민원1회방문처리제, 가족관
계등록, 여권업무, 지적공부관
리,지가조사 및 부동산 관리,

4. 교육정책, 평생교육, 도서정
책, 체육지원 -----

<삭 제>

제7조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 총무과·자치행
정과·회계과·세무1과·세무2
과·민원지적과-----.

② 행정지원국장-----
-----.

1. --- 인사단체-----

2. ----- 자치협력-----

3. 경리, 계약, 재산관리 -----

-

4. 세무, 취득세, 재산세, 과표 -

5. 지방소득세, 체납정리, 세외
수입관리, 통합기동징수 등에
관한 사항

새주소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제8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복지환경국에 복지지원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환경위생과·환경미화과를 둔다.

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 희망복지, 통합조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노인정책, 장애인복지, 생활보장 등에 관한 사항
3. 여성, 아동, 청소년, 보육, 외국인, 드림스타트 등에 관한 사항
4. 공중위생, 식품위생, 녹색성장 등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대책,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제9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건설

6. 민원, 가족관계등록, 여권업무, 지적업무, 지적재조사업무, 부동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8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 복지지원과·노인장애인과·가족복지과·환경위생과·환경미화과·공원녹지과
-----.

② -----

1. 생활민원-----

2. ----- 노인지원, 장애인복지-----
3. 여성정책, 아동보호---- 드림스타트 -----
-
4. 환경관리, 환경지도, 위생행정, 위생지도 ---
5. 환경미화, 자원순환, 폐기물관리 -----
6. 공원관리, 녹지관리, 산림휴양, 정원정책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①
----- 안전총괄과·건설

설과 · 도시과 · 교통과 · 건축과
· 공원녹지과 · 시설지원과를
둔다.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 재난관리, 통
신관제, 재해대책 및 복구지
원,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
2. 건설행정, 가로환경, 토목, 치
수등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의 수립 · 조정 및
도시 재개발, 도시재생 등에
관한 사항
4. (생략)
5. 경관디자인 및 광고물관리,
건축 · 주택행정, 건축허가관
련 복합민원처리 등에 관한
사항
6. 공원관리, 녹지관리, 산림휴
양, 정원정책 등에 관한 사항
7. (생략)

과 · 도시과 · 교통과 · 건축과 ·
시설지원과-----

-.

② -----
-----.

1. 안전정책, 재난관리, 중대재
해, 통신관제-----

2. ----- 치
수 등-----
3.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
생, 도시재생시설 -----

4. (현행과 같음)
5. 광고물관리, 경관디자인, 건
축허가, 공동주택 -----

--
- <삭 제>
7. (현행과 같음)

근 거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4호
-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조직운영을 위한 담당 신설 및 명칭 변경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등에 대해 정비하는 것으로
- 그 개정 내용이 조문의 뜻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선언적 형식 등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3. 작성자

- 소 속 : 기획예산실
- 직 급 : 지방행정서기
- 성 명 : 권민화
- 연 락 처 : 052-290-3142